

운영기관 목록

관할 고용센터	운영기관명	연락처	관할지역
서울고용센터	(주)지에스씨넷 서울지점	02-597-1949	서울특별시
서울고용센터	(주)제이엠커리어 서울서부	070-4613-4878	
서울고용센터	(주)잡모아 관악	02-837-0095 (내선안내 후, 230)	
인천고용센터	(주)채움에이치알디 송도지사	032-225-3139	인천광역시, 경기도 일부 (북부)지역*,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
인천고용센터	(주)휴먼잡트러스트	032-822-7357	
인천고용센터	(주)잡모아 인천서부지점	032-563-2265	
인천고용센터	(사)인천경영자총협회	032-428-7111	
수원고용센터	화성상공회의소	031-350-7969 031-350-7968 031-350-7967 031-350-7971 031-350-7970	경기도 일부 (남부)지역*
수원고용센터	수원상공회의소	031-8000-9432	
수원고용센터	(주)제니엘 성남지점	02-580-0174	
수원고용센터	(주)잡모아 안양지점	031-464-8885	
수원고용센터	(주)채움에이치알디 안산지사	070-5165-6034	
수원고용센터	(주)조인스잡(본사)	031-647-6995 031-647-3161	
춘천고용센터	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강원지회	033-262-2097 033-262-2095 033-263-2096 033-262-2098	강원특별자치도, 경기도 가평군 (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제외)
부산고용센터	(사)부산경영자총협회	051-647-7351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
부산고용센터	(주)에듀인잡컨설팅	051-636-8557	
부산고용센터	(주)두원잡	051-321-3343	
부산고용센터	(주)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	055-261-3447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
대구고용센터	(주)지에스씨넷 대구지점	053-525-1470	
대구고용센터	칠곡상공회의소	054-974-0850	
대구고용센터	(주)제이엠커리어 대구지사	053-745-1273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·전라북도, 제주특별자치도
광주고용센터	국제커리어센터	062-269-8721	
광주고용센터	(사)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지회	062-363-1330	
광주고용센터	(사)전북경영자총협회	063-282-3393	
광주고용센터	(사)전남경영자총협회	061-741-8107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·충청북도
대전고용센터	(사)대덕이노플리스벤처협회	042-867-9692	
대전고용센터	(사)충북경영자총협회	043-271-9806	
대전고용센터	(주)한국커리어잡스	070-5099-0712	
대전고용센터	(주)제이엠커리어 천안지사	070-4613-4888	
대전고용센터	충주상공회의소	043-843-7002	

* 인천고용센터 경기지역 관할 경기도 부천시, 김포시, 의정부시, 포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동두천시·연천군, 양주시, 고양시, 파주시

* 수원고용센터 경기지역 관할 경기도 수원시, 화성시, 용인시, 성남시, 광주시·양평군, 이천시, 여주시, 하남시, 안양시, 군포시, 광명시, 의왕시, 과천시, 안산시, 시흥시, 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

※ 위에 해당 되지 않은 지역은 관할 고용센터 구역의 대표지청 광역권역에 해당함

2024년도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

2024. 01.



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

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
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
미스매치 해소에 기여

지원대상

- '23.10.1. ~ '24.9.30.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(만15세~34세 대한민국 국민)

* 취업애로청년 우대(실업기간 4개월 이상, 고졸청년, 자립준비청년 등)



지원요건

-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(빈일자리: 조선업, 뿌리산업 등 제조업, 농업, 해운업, 수산업 등)

**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「고용24」에서 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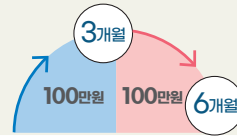
- 정규직으로 취업후 3개월 이상 근속, 고용보험 가입, 주 30시간 이상 근로



지원수준

-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원, 6개월 차 100만원 지원(최대 200만원)

*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허용



지원방식

- 청년 근로자의 참여신청에 따른 선착순 접수 →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

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할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됨

-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 참여 불승인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, 이 경우 '취업애로청년'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함

신청절차

- 「고용24」에서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 (2024.1.22. 개시)



※ 자세한 사항은 「고용24」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세부 요건 안내

-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'C' 제조업 전체가 대상임
* 그 외, '23년 관계부처 추천을 받은 농업, 해운업, 수산업, 음식점업 대상기업은 누리집 '고용24'에서 확인 가능
- 우선지원대상기업(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)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(신청인 포함) 기업에 해당해야 함
-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
*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가능하며, 취업애로청년은 선정시 우대함
- 취업-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,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
※ 이상 요건 및 예외 등 자세한 사항은 「고용24」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

청년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

회차	청년(정규직) 채용기간	접수기간	지원금 지급 기간
1-1월	23.10.01.~23.10.29.	24.01.22.~24.01.29.	사업참여 접수기간 마지막일로부터 14일내 지급 (초일산업, 보완일 제외, 휴일-공휴일 제외)
2-1월	23.10.01.~23.11.14.	24.02.01.~24.02.14.	
2-2월	23.10.01.~23.11.29.	24.02.16.~24.02.29.	
3-1월	23.10.01.~23.12.14.	24.03.01.~24.03.14.	
3-2월	23.10.01.~23.12.29.	24.03.16.~24.03.29.	
4-1월	23.10.01.~24.01.14.	24.04.01.~24.04.14.	
4-2월	23.10.01.~24.01.29.	24.04.16.~24.04.29.	
5-1월	23.10.01.~24.02.14.	24.05.01.~24.05.14.	
5-2월	23.10.01.~24.02.29.	24.05.16.~24.05.29.	
6-1월	23.10.01.~24.03.14.	24.06.01.~24.06.14.	
6-2월	23.10.01.~24.03.29.	24.06.16.~24.06.29.	
7-1월	23.10.02.~24.04.14.	24.07.01.~24.07.14.	
7-2월	23.10.17.~24.04.29.	24.07.16.~24.07.29.	

* '24. 8월 이후 접수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